

2021

연말정산 신고 방법

2021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말정산 대상자께서는 입력기한 내에 입력을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제신청을 누락하거나 세금이 추정되는 부당공제징수가 없도록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: 2022년 01월 15일(토)부터 오픈 예정

2. 웹정보시스템 입력 기간 : 2022년 01월 17일(월) ~ 01월 26일(수)

3. 제출서류 : 직접 제출서류 없음 _ 웹정보시스템 업로드 자료를 원본으로 간주함

*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외의 직접 입력한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

4. 연말정산 흐름도



5. 연말정산 진행 방법(세부)

가. 국세청 PDF파일 다운로드 [2022년 01월 15일(토) 오픈 예정]

-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(<http://www.hometax.go.kr>) 및 로그인 ▶ 연말정산간소화 ▶ 간소화 자료 조회
- ② PDF 파일 다운로드
 - 2021년 12개월 이상 근무자
모든 공제항목 조회 ▶ 한번에 내려받기 ▶ 암호설정(선택사항) ▶ 전자문서 내려받기 클릭 후 저장
 - 중도 입사자(본교 이외의 근무지 근무기간 포함)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
모든 공제항목 조회 ▶ 항목별 PDF 다운로드 ▶ 암호설정(선택사항) ▶ 전자문서 내려받기 클릭 후 저장

나. 학교 연말정산 프로그램 접속

- 학교 홈페이지 접속 ▶ PORTAL 로그인 ▶ 웹정보(학사서비스) ▶ 웹정보 ▶ 행정정보 ▶ 급여 ▶ 연말정산 ▶ 근로소득공제신고서 ▶ 연말정산입력 클릭

다. 연말정산 신고내역 입력 및 확인

- ① 연말정산 기본정보(인적사항, 급여, 근무기간 등) 확인
- ② 연말정산 기본설문 수행(연말정산 기초가 되는 설문으로 정확하게 답변 입력)
- ③ 종(전) 근무지 입력 (2021년 1월 ~ 12월 중 본교 외 다른 근무지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)
- ④ 부양가족 정보 확인(전년도 연말정산 대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해야 함)
 - ※ 인적공제 변동 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업로드 해야함
 - 연말정산프로그램 입력 마지막 단계인 결과/조회출력 ▶ 제출서류 ▶ 증빙을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후 “제출완료” 클릭
 - 부당공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목으로 양도 및 퇴직소득, 동일인 동시 공제 등 확인 필요
- ⑤ 국세청 PDF 파일 업로드
 - 찾아보기 클릭 ▶ PDF 파일 선택 ▶ PDF파일 등록 후 데이터 적용 클릭
 - ※ 중도 입사자의 경우 항목별로 PDF 파일 선택 후 각각 업로드 필요
- ⑥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외 수기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안내
 - 입력방법 : 공제 항목별 “추가” 버튼을 통해 입력 후 “저장”
 - 증빙자료 업로드 : 연말정산프로그램 입력 마지막 단계인 결과/조회출력 ▶ 제출서류 ▶ 관련 증빙을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후 “제출완료” 클릭
- ⑦ 주택자금공제가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관련 설문 수행
- ⑧ 연말정산 신고 확정
 - ‘사용자 최종 저장’ 클릭 후 연말정산 결과(예상치) 확인 가능
- ⑨ 연말정산 징수 또는 환급세액은 2022년 2월분 급여에 정산반영 예정이며, 연말정산 결과(예상치) 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 여부 선택 가능
 - 분납 신청 시 최대 3개월(2월~4월) 분할하여 급여에서 징수세액 공제

6. 기타

가.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방법(동영상) 및 매뉴얼은 2022년 1월 초 학교 PORTAL 공지 예정

나. 국세청 연말정산 문의사항

-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: ☎ 126 ▶ 1 ▶ 5
- ② 국세청 연말정산 세법 상담센터 : ☎ 126 ▶ 2 ▶ 3

다. 기타문의

- ① 죽전캠퍼스 재무회계1팀 ☎ 031-8005-2164
- ② 천안캠퍼스 재무회계2팀 ☎ 041-550-1411

7. 붙임

가.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

나. 연말정산프로그램 입력 참고자료

재무관리처장

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

구 분	2020년	2021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될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* 적용 허용 1.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2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3.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 적용 (단 2번의 경우 1주택자 포함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세 최고세율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 <th style="width: 70%;">과세표준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원 이하</td> <td>6%</td> </tr> <tr> <td>1,200 ~ 4,600만원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4,600만원 ~ 8,800만원</td> <td>24%</td> </tr> <tr> <td>8,800만원 ~ 1억5천만원</td> <td>35%</td> </tr> <tr> <td>1억5천만원~3억원</td> <td>38%</td> </tr> <tr> <td>3억원 ~ 5억원</td> <td>40%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</td> <td>4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과세표준	세율	1,200만원 이하	6%	1,200 ~ 4,600만원	15%	4,600만원 ~ 8,800만원	24%	8,800만원 ~ 1억5천만원	35%	1억5천만원~3억원	38%	3억원 ~ 5억원	40%	5억원 초과	42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세 최고세율 이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 <th style="width: 70%;">과세표준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원 이하</td> <td>6%</td> </tr> <tr> <td>1,200 ~ 4,600만원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4,600만원 ~ 8,800만원</td> <td>24%</td> </tr> <tr> <td>8,800만원 ~ 1억5천만원</td> <td>35%</td> </tr> <tr> <td>1억5천만원~3억원</td> <td>38%</td> </tr> <tr> <td>3억원 ~ 5억원</td> <td>40%</td> </tr> <tr> <td>5억원 ~ 10억원</td> <td>42%</td> </tr> <tr> <td>10억원 초과</td> <td>4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과세표준	세율	1,200만원 이하	6%	1,200 ~ 4,600만원	15%	4,600만원 ~ 8,800만원	24%	8,800만원 ~ 1억5천만원	35%	1억5천만원~3억원	38%	3억원 ~ 5억원	40%	5억원 ~ 10억원	42%	10억원 초과	45%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 ~ 4,600만원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만원 ~ 8,800만원	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만원 ~ 1억5천만원	3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5천만원~3억원	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억원 ~ 5억원	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	4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 ~ 4,600만원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만원 ~ 8,800만원	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만원 ~ 1억5천만원	3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5천만원~3억원	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억원 ~ 5억원	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~ 10억원	4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억원 초과	4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일시 상향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 <th style="width: 33%;">7천만원 이하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1억2천만원 초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 300만원</td> <td>연 280만원</td> <td>연 23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7천만원 이하	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	1억2천만원 초과	연 300만원	연 280만원	연 23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환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 <th style="width: 33%;">7천만원 이하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1억2천만원 초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 300만원</td> <td>연 250만원</td> <td>연 2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7천만원 이하	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	1억2천만원 초과	연 300만원	연 250만원	연 2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
7천만원 이하	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	1억2천만원 초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 300만원	연 280만원	연 23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천만원 이하	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	1억2천만원 초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 300만원	연 250만원	연 2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(개정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신 설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및 추가공제 한시적 신설 -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*에 대한 10% 공제 및 추가공제 한시 허용 * 소비증가분 =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- (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× 105%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(개정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 <th style="width: 7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천만원 이하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1천만원 초과</td> <td>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구분	세율	1천만원 이하	15%	1천만원 초과	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1년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5%씩 상향조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70%;">구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width: 30%;">세율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2021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2022년 이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천만원 이하</td> <td>20%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1천만원 초과</td> <td>35%</td> <td>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구분	세율		2021년	2022년 이후	1천만원 이하	20%	15%	1천만원 초과	35%	30%																	
구분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천만원 이하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천만원 초과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21년	2022년 이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천만원 이하	20%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천만원 초과	35%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붙임 : "나"]

1. 부양가족 정보의 추가/수정/삭제



가. “부양가족 정보”메뉴에서 추가/수정/삭제 가능

나. 부양가족 추가/수정시 소득요건 및 소득공제 여부 확인 후 체크

부양가족 기본 정보

성명	김둘리	내국인 여부	내국인
가족관계	직계비속 자녀, 입양자	주민등록번호	170101 - 4234567 (만 2세)
장애인여부	비장애인	입양여부	입양일
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여부	아니오 *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인을 받고, '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'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한 람		
소득요건	충족 *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		

공제항목	공제내용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본공제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녀자공제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공제	1인당 150만원 공제 1. 근로자 본인 2. 소득금액요건+1을 충족한 배우자 3.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(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, 수급자, 위탁아동) 연령요건+2 및 소득금액요건을 갖춘 경우 *1 소득금액요건: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단,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) *2 연령요건: 만20세 이하(1938.1.1.이후 출생) 또는 만 50세 이상(1958.12.31.이전 출생) *3 생계요건: 근로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(직계비속입양자 제외)이 취학, 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 제출 -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할표 - 일시퇴거의 사유별 서류(재학증명서, 요양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 ※ 예외사항 -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일 경우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- 배우자 및 수급자의 경우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-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생계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(여성) 50만원 공제 (단,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)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※ 참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고려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 100만원공제 (단,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)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, 입양자가 있는자

1) 소득요건 (충족/불충족) 중 선택

충족 선택 :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

불충족 선택 :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

2) 소득요건이 “충족”이면 공제내용을 확인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되는 공제항목 체크

2. 국세청자료 업로드 후 적용



업로드한 PDF금액과 적용금액(연말정산 계산과정에 포함될 금액)이 상이한 경우 주황색으로 표기됩니다. 상세내역별 “보기”버튼을 클릭하여 차액이 발생된 항목을 확인하세요.

※ 연말정산 파일 업로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드시 데이터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
(PDF파일 업로드 후 “데이터 적용”을 클릭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음)

3. 연말정산 사용자 확정 후 수정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프로그램 상단 04.결과 조회/출력에서 “사용자 확정 해제” 신청 후 입력창을 닫고 10분 후 다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수정 (사용자 확정 해제 신청 후 10분이 지나도 수정이 되지 않으면 재무회계1, 2팀 연락)